

산림분해소나무 재선충병 등 특정감사
(2016. 6. 1 ~ 6. 30)

감사결과 공개문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산림 보전에 이바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에 의거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훈증,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는지와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년 ◎☆◇(주)와 계약(201*.**.**)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의 고사목 인력수집과 기존 훈증무더기 인력수집량의 일부를 고사목 훈증과

기계수집으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고사목 기계수집량의 일부를 누락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작업 방법의 무단 변경과 작업량 누락 등으로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과다 집행된 공사비 0,000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산림 보전에 이바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에 의거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훈증,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는지와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2지구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년 ◎☆◇과 계약(201*.**.**)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의 고사목 인력수집과 기계수집의 일부를 고사목 훈증으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시행

하고 기존 훈증무더기 기계 및 인력수집물량의 일부를 누락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작업 방법의 무단 변경과 작업량 누락 등으로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 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과다 집행된 공사비 0,000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산림 보전에 이바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에 의거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훈증,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는지와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1지구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년 (주)◎☆◇과 계약(201*.**.**.)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의 기존 훈증무더기 인력수집과 기계수집의 일부 물량을 기존 훈증무더기 매물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기존 훈증무더기 인력 및 기계수집 물량의 일부를 누락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작업 방법의 무단 변경과 작업량 누락 등으로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과다 집행된 공사비 00,000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산림 보전에 이바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에 의거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훈증,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는지와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2지구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년 ◎☆◇과 계약(201*.**.**)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사목 인력수집과 기계수집의 대운반은 무대임에도 설계도서 내역서에 계상된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또한 무대인 대운반의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과다 집행된 공사비 00,000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산림 보전에 이바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에 의거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훈증,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는지와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지구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년 (주) ◎☆◇과 계약(201*.**.**.)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의 기존 훈증무더기 기계수집을 매몰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기존 훈증무더기

기계수집량의 일부를 누락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작업 방법의 무단 변경과 작업량 누락 등으로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 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과다 집행된 공사비 0,000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산림 보전에 이바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에 의거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훈증,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는지와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지구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년 ◎☆◇과 계약(201*.**.**)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의 기존 훈증무더기 기계수집의 일부 물량을 매몰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시행하였음

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작업 방법의 무단 변경으로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 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과다 집행된 공사비 0,000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산림 보전에 이바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에 의거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훈증,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는지와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지구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년 ◎☆◇와 계약(201*.**.**)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의 고사목 기계수집 물량의 일부를 고사목 훈증으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기존

훈증무더기 수집 물량의 일부를 누락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작업 방법의 무단 변경과 작업량 누락 등으로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과다 집행된 공사비 00,000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산림 보전에 이바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에 의거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훈증,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는지와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지구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년 (주) ◎☆◇와 계약(201*.**.**)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의 고사목 기계수집 물량의 일부를 인력수집과 고사목 훈증으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위험목중 일부를 일반고사목으로 수집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작업 방법의 무단 변경 등으로 공사비 0,000천원 (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과다 집행된 공사비 0,000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산림 보전에 이바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에 의거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훈증,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는지와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지구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년 (주)◎☆◇과 계약(201*.**.**)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의 고사목 인력수집 중 일부 물량을 기계수집하고, 고사목 기계수집중 일부를 훈증

으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기존 훈증무더기 인력수집과 기계수집의 일부 물량을 매몰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작업 방법의 무단 변경과 작업량 누락 등으로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과다 집행된 공사비 0,000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산림 보전에 이바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에 의거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훈증,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는지와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지구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년 ◎☆◇과 계약(201*.**.**)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의 고사목 인력수집 중 일부 물량을 기계수집으로, 고사목 기계수집의 일부 물량을

훈증으로 무단 변경하여 시행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작업 방법의 무단 변경 등으로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과다 집행된 공사비 0,000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산림 보전에 이바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에 의거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훈증,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는지와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지구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년 (주)◎☆◇과 계약(201*.**.**.)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의 기존 훈증무더기 인력수집의 일부 물량을 기계수집으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고사목 기계수집량의 일부를 누락 하고 고사목 원목 대운반은 무대임에도 설계도서 내역서에 계상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작업 방법의 무단 변경과 내역서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과다 집행된 공사비 00,000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산림 보전에 이바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에 의거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훈증,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는지와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1지구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년 ◎☆◇과 계약(201*.**.**.)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의 기존 훈증무더기 기계수집중 일부 물량(지조)을 매물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시행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작업 방법의 무단 변경 등으로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과다 집행된 공사비 0,000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3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산림 보전에 이바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에 의거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훈증,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는지와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3지구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년 ◎☆◇(주)와 계약(201*.*.*.**.)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의 고사목 인력수집 중 일부 물량을 고사목 기계수집으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시행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작업 방법의 무단 변경 등으로 공사비 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 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3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과다 집행된 공사비 000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산림 보전에 이바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에 의거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훈증,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는지와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지구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년 (주)◎☆◇과 계약(201*.*.*.**.)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의 고사목 인력수집 중 일부 물량을 기계수집하고 고사목 기계수집의 일부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훈증처리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작업 방법의 무단 변경 등으로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과다 집행된 공사비 0,000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산림 보전에 이바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에 의거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훈증,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는지와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지구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년 (주)◎☆◇과 계약(201*.**.**.)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의 기존 훈증무더기 기계수집을 매몰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기존 훈증무더기

인력수집의 일부를 누락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작업 방법의 무단 변경과 작업량 누락 등으로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 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과다 집행된 공사비 0,000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산림 보전에 이바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에 의거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훈증,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는지와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1지구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년 ◎☆◇과 계약(201*.**.**)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의 고사목 인력수집 중 일부 물량을 기계수집하고 고사목 기계수집중 일부 물량을

훈증으로 무단 변경하여 시행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작업 방법의 무단 변경 등으로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1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과다 집행된 공사비 0,000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산림 보전에 이바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에 의거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훈증,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는지와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2지구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년 (주)◎☆◇과 계약(201*.**.**)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의 고사목 기계수집 중 일부 물량을 훈증으로 무단 변경하여 시행하고 내역서상

원목량과 지조량의 수량이 잘못 계상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작업 방법의 무단 변경과 내역서의 잘못 계상된 수량 등으로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2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과다 집행된 공사비 0,000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산림 보전에 이바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에 의거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훈증,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는지와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지구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년 (주)◎☆◇과 계약(201*.**.**)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의 내역서상 지조에 대한 집적작업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음에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작업량 이중 계상 등으로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과다 집행된 공사비 0,000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정요구

제 목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산림 보전에 이바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에 의거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방제사업의 설계도서에 따라 훈증,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방제하는지와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6호 2016.1.1) 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지구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년 ◎☆◇과 계약(201*.**.**)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의 기존 훈증무더기 기계수집을 매몰로 무단 변경하여 시행하고 기존 훈증무더기

인력수집량의 일부를 누락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작업 방법의 무단 변경과 작업량 누락 등으로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지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과다 집행된 공사비 0,000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